

의원급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확산 사업 공모

‘의원급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확산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1일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장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6월)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 EMR 인증제도 1주기('20년~'22년) 내에 의료기관에 보편적 사용인증 확산을 통한 인증제도 조기 안착을 목표로 하여,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사업」을 추진 중
 - 사업의 경과 및 추이를 고려하여, '21년 사용인증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사용인증 확산 방안 마련 필요
-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EMR)으로 작성·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여야 하나,
 - 의원급 의료기관 전자서명 기능 도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전자서명 기능 사용을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하는 본 인증제도는 확산의 한계점이 존재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자서명 기능 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인 사용인증 확산은 난망한 상황
-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및 동법 제23조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증 EMR 제품 사용 및 전자서명 기능 사용에 대한 지원 필요

- 의료기관에서 사용인증 신청 제반서류(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등) 완결을 위해선 **EMR 업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하는 건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 한정된 자원 내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EMR 업체에서 의료기관 사용인증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을 통한 심사수행 필요
-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EMR 인증제도 1주기('20년~'22년) 내에 인증 제도 조기 안착 목표에 초점을 맞춰, 사용인증 확산을 위해 추가 사업 추진 필요
 -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 대량의 사용인증 확산을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사용인증 확산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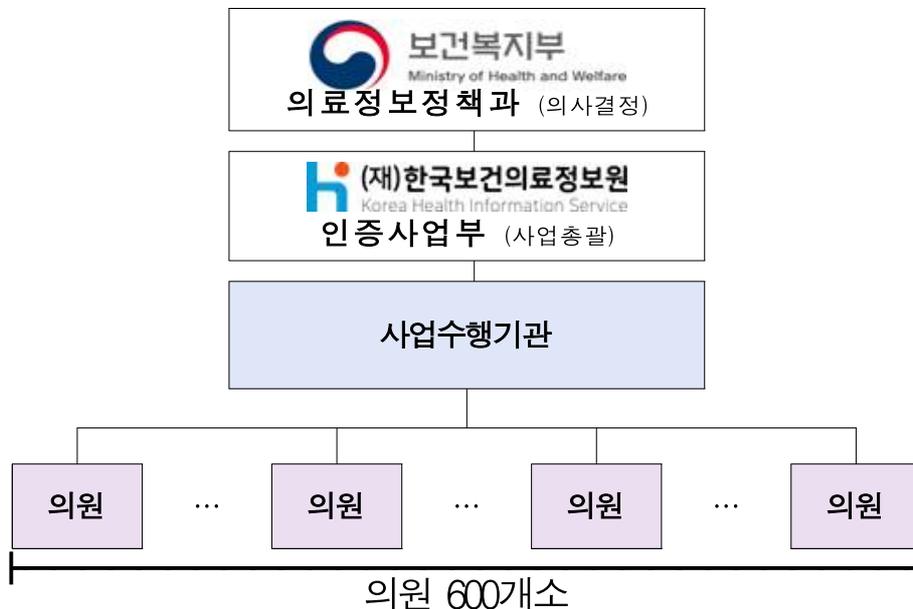
□ 공모 일반사항

- (공모명) 의원급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확산 사업
- (사업목적) 인증 전자의무기록(EMR) 제품 및 전자서명 기능을 의료 기관에 보급을 통한 환자안전 강화 및 전자의무기록 관리 강화
- (사업목표) 의원급(유형1) 의료기관 600개소 사용인증 확산
- (지원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유형1 제품인증 획득 업체(1개소)
 -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600개소 이상에 EMR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는 EMR 업체로서,
 -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유형1 제품인증 획득 업체
 - ※ 최소 사용인증 확산 600개소 이상 제안
 - ※ 사용인증 확산 수행 EMR 제품별 사용 의원 수 등 포함하여 제안
 - ※ 원활한 사용인증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유형1 제품인증 획득 업체에 한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하도급 허용*
 - * 컨소시엄 구성 또는 하도급 포함 제안 시, 구성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술
 - ※ 공모 시점에 유관사업(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사업) 수행 완료 또는 수행중인 업체는 하도급으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사용인증 확산을 위한 설치·교육 및 전자서명 사용 지원
- (사업기간) 계약체결 후 ~ '21.11.30.까지
- (지원금액) 318백만원(부가세포함)
- (사업비 지급방안) 공모에 따른 사업계약 진행 후 선금 70%, 잔금 30% 집행 예정

○ (주요 사업내용)

1. 인증 EMR 제품 의료기관 설치·교육
2. 의료기관 전자서명 기능 설치 및 사용 지원
3. 의료기관 사용인증 심사 수검 지원

□ 추진 체계



○ 주요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검토·확정 • 사업 관련 내용 검토 및 의사결정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인증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실무 총괄 관리
사업수행기관 (EMR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인증 EMR 제품 의료기관 설치·교육 - 의료기관 전자서명 기능 설치 및 사용 지원 - 의료기관 사용인증 심사 수검 지원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EMR 제품 사용 및 사용인증 심사 수검

□ 추진 일정

- (사업 공모) '21.7.21. ~ '21.8.10.(3주간)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1.8.11. ~ '21.8.17.(1주간)
- (사업수행) '21.8월 ~ '21.11월(약 3.5개월)
- (검수 및 사용인증 심사) '21.12.1. ~ '21.12.15.(2주간)

사업 추진 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W1	W2	W3	W4	W1	W2	W3	W4	W1	W2	W3	W4	W1	W2	W3	W4	W1	W2	W3	W4	W1	W2	W3	W4
• 사업계획 및 공모				■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사업수행																								
- 착수보고												■												
- 주간보고, 월간보고												■	■	■	■	■	■	■	■	■	■	■	■	
- 종료보고																						■		
• 검수 및 사업 종료																						■		
• 사용인증 심사																						■	■	

※ 사업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사용인증 보편적 확산을 통한 환자안전 보장 및 국민건강 질 향상
- 의료기관에 전자서명 기능 보급을 통한 전자의무기록 관리 강화로, 국민의 전자의무기록 관리 충족성 및 보안성 강화
- '21년도 사용인증 목표 달성 및 인증제도의 안정적 운영·활성화 도모

Ⅲ

세부 사업내용

□ 추진 목표

목표

사용인증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 질 향상

추진
내용

EMR 사용인증 확산 목표 달성 및 제도 확산

기대
효과

**사용인증 확산을 통한
환자안전 강화**

❖ 인증 EMR 제품 보편적
확산을 통한 환자안전 보장
및 국민건강 질 향상

**국민의 전자의무기록 관리
충족성 및 보안성 강화**

❖ 의료기관에 전자서명 기능
보급을 통한 전자의무기록
관리 강화

추진
세부
사항

- 1 인증 EMR 제품 의료기관 설치·교육
- 2 의료기관 전자서명 기능 설치 및 사용 지원
- 3 의료기관 사용인증 심사 수검 지원

□ 사업내용

① 인증 EMR 제품 의료기관 설치·교육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증기준(유형1)이 반영된 EMR 제품을 600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치 및 교육
- (용역 산출물) 의료기관별 설치 및 교육에 따른 용역 산출물 제출
 - ※ 용역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의료기관 설치) EMR 화면에 인증마크(EMR 버전 등) 및 의료기관 명이 표시된 화면 캡처 등
 - (EMR 제품 교육) 의료기관 날인이 포함된 교육 확인서 등 제출

② 의료기관 전자서명 기능 설치 및 사용 지원

- 의료기관에서 사용인증 획득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전자서명 기능의 별도 도입(3rd Party 제품)이 필요하여, 해당 기능을 설치하고 1년 이상 전자서명 기능 사용 지원
- (용역 산출물) 의료기관별 설치 및 사용 지원에 따른 용역 산출물 제출
 - ※ 용역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전자서명 기능 설치) 전자서명 기능 동작(설치) 화면 및 의료기관 명이 표시된 화면 캡처
 - (사용 지원) 1년 이상 전자서명 기능 사용 지원에 대한 협약서(의료기관 날인 포함) 등

3 의료기관 사용인증 심사 수검 지원

○ 의료기관에서 인증 EMR 제품 사용 및 전자서명 기능 사용에 따른 사용인증 심사(샘플링) 수검 지원

- 인증 EMR 제품의 설치, 인증 EMR 제품 기능 변경 유무 확인, 전자서명 기능 사용 확인을 위해, 600개소 의원 중 일부를 임의 선정*하여, 직접 방문** 시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사용인증 확산 EMR 제품별 50개소 이상

** 코로나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원격수행 또는 증빙자료 제출 방식으로 수행 가능

*** 의료기관 방문 일정 조정, 심사장소 제공, EMR 제품 기능 시연, 데이터 조회 등

※ 사용인증 심사에 따른 미이행 사항(인증 EMR 제품 미설치, 인증 EMR 제품 기능 변경, 전자서명 기능 미설치 등)이 발견 시, 즉각 조치해야 하며, 2개소 이상 미이행 사항 발견 시, 600개소 의원 전수 직접 방문(또는 전수 보완한 증적 제출) 가능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 지원 수행

○ (용역 산출물) 의료기관별 사용인증 신청 서류 및 심사 증빙자료 제출

※ 용역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용인증 신청) 사용인증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일체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2호)에 따른 사용인증 신청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심사 증빙자료) 전자서명 기능 사용에 따른 사용인증 심사 수행용 증빙자료*

*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계정, 서명데이터**, 서명 일시 등의 증적자료

** (서명) 전자서명 전·후 데이터 및 전자서명 전·후 데이터 복호화 Tool 등

□ 공모 추진방안

- (공모명) 의원급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확산 사업 공모
- (모집공고) 공모 게시 후 3주간 공고 ... '21.7.21. ~ '21.8.10.(3주간)
- (공고방법)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홈페이지 및 EMR인증관리 포털 공고 게시
 ※ (홈페이지) : <https://www.k-his.or.kr>, (포털) <http://emrcert.mohw.go.kr>
- (홍보방법) 유형1 제품인증 획득 업체 대상으로,
 - 본 공고 안내 및 설명회 참석 신청 e-mail 발송 ⇒ 설명회 참석 신청 상황에 따른 필요 시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식은 별첨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신청공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서식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제안서 **10부**
- [서식3] 참여 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유형1 제품인증서 사본 등 지원대상에 적합을 증빙하는 서류(자료)
- 사업수행 일정관리(WBS) 계획서(자유양식)

- (제출방법) 방문 제출 ... 제출서류 파일은 PDF 파일 등으로(날인 등 포함)로 변환·압축하여 별도 USB 및 e-mail(koreakcd@k-his.or.kr)로 제출

※ 최종 선정기관은 추후 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원본 일체 필수 제출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8층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담당부서) 인증사업부

※ (접수증) 제출자 및 접수자 서명이 포함된 접수증 작성 예정

○ (제출마감) 모집공고 종료일 16:00까지 방문 제출

○ (기타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파기 및 사업비 미지급(또는 환수) 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을 따름

□ 공통사항

-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자가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실시 가능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및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 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해지하며, 해당 건의 사업비를 미지급함

□ 선정평가 기준

- (선정방법) 기술평가(사업제안서 평가) 결과를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 ※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기술평가 및 선정 대상 제외
- (1단계, 기술평가) 사업제안서를 활용하여, 기술평가 실시
 -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발표) 사업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실시
- (참석자) 제안사별 사업설명 발표자 등 2인 이내 배석 가능
- (동점처리방안)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평가위원)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8인으로 구성하고 전체 평가 과정을 동영상 녹화 예정
 - ※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위원 인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술평가 기준)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일반 (20)	사업 참여 개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동기 및 배경 ▪ 사업 참여 목적
	사업 이해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공모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사업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사업수행 (60)	인증 EMR 제품 설치 및 교육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EMR 제품 설치 및 교육 등 의료기관 확산 전략·계획의 적절성
	전자서명 기능 지원 계획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 전자서명 기능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전략·계획의 적절성 - 전자서명 기능 보급·확산 전략·계획 - 전자서명 기능 사용 유도 전략·계획
	사용인증 심사 수검 지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인증 심사지원에 대한 구체적 전략·계획의 적절성 - 지원방법, 일정계획,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등
	사용인증 확산 가능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사용인증 확산 600개소 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기타 (20)	품질관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사항 유지·관리 등 품질관리방안의 적절성 - 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사후관리 등
	예산 관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산출 및 집행 계획 적절성
	추가제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추가 수행 계획 제안 등 ▪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 위 사항들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
합 계		100점

- 기술평가 점수 85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2단계 사업계획·사업비 심의 조정 진행

○ (2단계, 사업계획·사업비 심의조정)

-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 선정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협의 후 사업수행 계획을 확정
- 공고문 상의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사업자와 심의조정을 진행함

○ (3단계, 계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선정된 컨소시엄은 당초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계약체결)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한국 보건 의료정보원과 컨소시엄 대표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 및 지급

□ 수행내역 관리

- (주·월간보고) 주·월별 진행사항 점검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
 - ※ 사업 책임자가 직접 집행사항 보고하는 것을 원칙
 - ※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보고 가능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착수보고, 종료보고
- 상기 사업이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 사업비 관리

- 사업비(사업지원비)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영
- (사업비 정산)

- 목표 대비 實 사용인증 확산 의료기관 비율로 사업비 재산정

사업비	사업비 정산
(최대) 318백만원	318백만원 x 實 사용인증 확산 의료기관 개소 수* ÷ 600개소

* 상기 사업내용(인증 EMR 제품 의료기관 설치·교육 등)의 산출물 제출을 통한 발주기관에서 검수가 완료된 의료기관 개소 수

※ (예시) 사용인증 확산 300개소 검수 완료 시, 사업비는 159백만원으로 산정

※ 사용인증 확산 600개소 초과 달성하는 경우, 사업비는 최대 318백만원으로 산정

- 재산정에 따른 초과지급액, 사용 잔액, 불인정금액은 환수(또는 미지급) 조치 가능

- (사업비 집행)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집행 내역, 증빙서류 등에 대해 별도 회계법인에 제출·검토를 통한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

※ 본 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 집행은 불가

- (회계정산) 사업비의 일부를 별도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 용역비로 산정하여,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비 지출계획 및 지출내역 점검 등 회계정산 실시(컨소시엄 참여 기관 포함)

□ 품질관리

- 인증 EMR 설치(보급) 등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는 EMR 사용인증 수검으로 진행

□ 검사·검수

- ('21.11월 ~ '21.12월) 實 사용인증 확산 의료기관 검수 및 사업비 정산

□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자체 공급한 인증 EMR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 단, 인증 EMR 시스템의 하자보수 내용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필수 인증기준 기능에 한함

Ⅶ**세부사항 문의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부장	송승용	02-6263-8354
인증사업부	과장	김창대	02-6263-8357

e-mail : koreakcd@k-his.or.kr

-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